

#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3
----------	------

제출년월일 : 2010. 3.

제 출 자 : 심종섭 의원 외 4명

## 1. 개정취지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사망한 군경의 유가족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어 오신 분들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지원대상자의 연령제한 없이 지급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유가족의 범위를 전쟁중 사망한 군경의 유가족으로 한정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유가족까지 확대 지급함(안 제2조 제2항, 제3조)
- 나. 65세 이상에 적용하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연령제한 폐지(안 제3조, 제4조)
- 다. 지급대상을 충주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자로 하는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 (안 제4조)
- 라.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조항 신설(안 제8조, 제9조)
- 마. 이 조례는 2010. 7. 1부터 시행함(안 부칙)

## 3. 입법예고 결과

- 시민 의견 : 접수된 의견 없음
- 충주시 의견
  - 참전유공자 예우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지급대상 확대 추진 필요

## 4. 기타 참고자료 : 관계법령 별첨

- 덧붙임 1.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관계법령

## 충주시 조례 제 호

###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각호를 포함한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유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중 순직한 군경으로서 제5조에 의하여 2010년 7월 1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전항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를 말한다.

제3조의 본문의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 한다.

제4조 본문의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충주시에 1년 이상’을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충주시에’로 하고 단서의 ‘국가보훈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1호 서식과 같이 한다

제6조 제3항의 ‘지방보훈청장’을 ‘지방보훈관서장’으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u>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u>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생략) ① <u>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u>  <div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div></p>	<p>제2조(정의)①----「<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u>」.....            ②<u>유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중 순직한 군경으로서 제5조에 의하여 2010년 7월 1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전항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를 말한다.</u></p>
<p>제3조(지원사업) <u>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u></li> <li>2. ~ 3. (생략)</li> </ol>	<p>제3조(지원사업) -----            ----- <u>참전유공자 및 유족에</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u>                -----</li> <li>2. ~ 3. (현행과 같음)</li> </ol>
<p>제4조(지원대상자) <u>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u></p>	<p>제4조(지원대상) ----- <u>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충주시에</u>            -----            ----- <u>국가보훈청장이 -----</u>            -----</p>
<p>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②(생략)            ③<u>시장은 제5조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u></p>	<p>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②(현행과 같음)            ③-----            ----- <u>지</u>            ----- <u>방보훈관서장에게 -----</u></p>

현행	개정안
<p data-bbox="384 366 560 404">&lt; 신설 &gt;</p>	<p data-bbox="810 366 1412 491">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p> <ol data-bbox="842 504 1412 635"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42 504 1412 585">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li data-bbox="842 598 1412 635">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li> </ol>
<p data-bbox="384 694 560 731">&lt; 신설 &gt;</p>	<p data-bbox="810 694 1412 819">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ol data-bbox="842 832 1412 1094"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42 832 1412 912">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li> <li data-bbox="842 926 1412 1006">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data-bbox="842 1019 1412 1094">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li> </ol>
<p data-bbox="161 1159 486 1196">제8조(시행규칙) (생략)</p>	<p data-bbox="810 1159 1348 1196">제10조(시행규칙) (현행 제8조와 같음)</p>



# 관 련 법 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2. (생략)

3. 전몰군경(전몰군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17.(생략)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매)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③ 삭제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와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충주시립우특국악단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립우특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주시립우특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금과 전통국악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한 충주시립우특국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충주시립우특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과 국악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고 부단장은 예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② 단원은 지휘자 1명을 포함한 55명 이내로 하되 상임단원 40명 이내, 비상임 단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국악단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업무) 국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가야금 및 전통국악예술의 계승발전
2.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국악보급 및 공연
3. 우특당 시설유지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사고가 있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